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專門委員 檢討報告書

1. 발의자 : 연만흠의원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06년 8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명시·조문 표현방식 통일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시 잘못 표기된 안 제24조제3항의 “제29조”를 “제30조”로 정정(안 제24조제3항)

나. 관련조항 명시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(안 제41조제2항제3호)

○ 3.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⇒ 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

다. 안 제41조제2항제4호 중 조례제정시 잘못 표기된 “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”을 “제24조”로 정정하고, 제3호와 표현 방식을 통일함(안 제41조제2항제4호)

○ 4. 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에 관한 사항 ⇒ 4. 제24조의

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5. 검토의견

-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,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방식을 통일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
- 안 제24조 및 제41조의 오기된 조문의 정정은 동 조례제정문안과 현행 조례,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확인한 바 이는 조례제정시 오기된 조문으로 안 제24조제3항의 제29조는 제30조로, 안 제41조제2항제4호의 제23조는 제24조로 정정하는 것은 타당하며,
 - ※ 동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제243회임시회(2005.9.5~9.14)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05.9.7)에서 심사하였음.
- 안 제41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규정 명시 및 조문 표현방식을 통일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※ 안 제41조제2항제4호는 오기된 조문 제23조를 제24조로 정정하고 제3호와 표현방식을 통일하는 것임.

붙임 :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